

대학원 생명과학과 내규 (2026.6.12. 개정)

제 1 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의 배점기준은 석사, 박사 및 통합학위과정이 동일하고, 총 100점 중에서 서류전형 60점, 구술면접 40점으로 하며,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석사학위과정은 70점 이상, 박사 및 통합학위과정은 8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학과전형	석사	박사 및 통합
서류전형(60)	학업성취도(30)	석사와 동일
	연구 및 학업계획(10) 추천 및 종합평가(20)	
구술면접(40)	전공지식 및 연구잠재력(30) 지원동기 및 태도(10)	석사와 동일

② 전형위원은 학과장을 포함하여 3인을 원칙으로 하며 각 세부전공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지원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그룹을 나누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 조 (대학원 석·박사과정 교과과정)

① 생명과학과의 기초핵심과목은 아래와 같다.

학수번호	과목명	시간/학점	개설학기
G16976	고급생화학(Advanced Biochemistry)	3/3	1
G16993	고급세포생물학(Advanced Cell Biology)	3/3	2
G16977	고급분자생물학 (Advanced Molecular Biology)	3/3	1
G16997	세포신호전달(Cellular Signal Transduction)	3/3	2
G16978	암생물학(Cancer Biology)	3/3	1

②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초핵심과목 중 2과목 이상, 통합학위과정은 3과목을 수강한다.

제 3 조 (졸업이수학점)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60학점으로 한다.

제 4 조 (보충과목제도)

- ① 생명과학 출신인 경우에는 보충과목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이외 다른 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출신학교성적 중 수강한 전공교과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부교과목 중 최소 3학점 이상 12학점 이내의 보충과목을 부여한다.

제 5 조 (종합시험)

- ①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 및 통합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 생명과학과 종합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석사학위과정	기초핵심과목 중 1과목 선택 + 수강과목 중 1과목 선택
박사학위과정	기초핵심과목 중 1과목 선택 + 수강과목 중 2과목 선택
통합학위과정	기초핵심과목 중 2과목 선택 + 수강과목 중 1과목 선택

- ③ 시험일은 5월 중순~6월 초, 11월 중순~12월 초에 시행한다.
- ④ 합격점은 70점 이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⑤ 50점 이상인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50점 미만의 경우 재시험 응시 자격이 없고, 졸업이 한 학기 연기된다.
- ⑥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로 변환하여 석사학위를 받는 경우, 적어도 1학기 이전에 결정하고, 석사 종합시험을 통과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석사과정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변경은 적어도 3학기 이내에 결정하고, 변경한 학생이 석사 종합시험을 통과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통합 학위과정 종합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⑧ 기초핵심교과목 성적우수자에 대한 종합시험 면제: 기초핵심교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강한 학생의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수강 중인 교과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년 2학기 종합시험 응시자부터 적용). (2023.11.22 수정)
* 면제 기준은 성적 상위 30% 이내를 원칙으로 하여 해당 과목 담당 교수가 결정함.
- ⑨ 종합시험 일부 과목 합격 시, 남은 과목 합격 시까지 기존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6 조 (영어시험)

- ①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표 원본과 사본을 5월 중순, 11월 중순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학과장이 사본을 원본대조 후 확인 서명하여 증빙자료로 사용한다.
- ② 영어시험의 합격기준

TOEFL(IBT)	TOEIC	TEPS	NEW TEPS	IELTS	TOPIK(외국인)
61	585	251	222	5.5	5급

제 7 조 (통합자격시험)

- ① 통합학위자격은 평균성적이 3.0 이상이고,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인을 구성하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구두발표로써 자격을 심사한다.
- ② 시험일은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6월과 12월 중에 시행한다.

제 8 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

- ① 석사, 박사, 통합학위과정 입학을 지망하는 학생은 원하는 지도교수 명단을 제출하고 대학원 입시위원회에서 학생의 지망에 따라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 1인은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석사학위과정은 동일학기에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교내외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④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합하여 1회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2/3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 4/5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⑤ 논문심사 이후 학과에서 주관하는 논문발표회를 통하여 석사학위 수여자는 포스터발표, 박사학위 수여자는 구두발표를 실시하며 논문발표회 일정은 학과장이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⑥ 논문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생명과학과 대학원과정의 졸업논문 심사 규정을 따른다.

제 9 조 (졸업자격기준)

- 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제1저자로 1회 이상 발표 또는 전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 ②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박사학위논문의 주요 내용을 JCR 분야별 상위 25% (최근 3년 중 유리한 기준 선택) 이내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승인도 인정). 단, 논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생명과학과 대학원 졸업논문 심사 규정)

[석사과정]

- ① 논문심사위원명단 제출: 논문심사 대상자는 지도교수와 심사일 및 심사위원에 대한 상의를 거친 후, 5월(8월 졸업)과 11월(2월 졸업) 중 매 학기 초 학적팀에서 공지한 기일까지 논문심사위원명단을 학과 행정실로 제출한다.
- ② 논문심사: 논문심사 대상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 청구논문 초안을 심사일 1주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고, 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논문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재심의: 1차 논문심사 결과 학위 청구논문 자격이 부족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④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보고 관련 서류를 6월(8월 졸업)과 12월(2월 졸업) 중 매 학기 초 학적팀에서 공지한 기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제출한다.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인준서 원본 및 사본 제출 후, 원본은 반환받아 학생이 보관한다.
- ⑤ 학회 발표(학술대회 초록집 해당 페이지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 혹은 논문투고 증빙을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기일(학적팀 공지)까지 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도교수의 책임과 보증 하에 제출 기일을 학위 수여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6.3.18. 개정)

[박사과정]

- ① Guidance committee 구성: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생은 자격심사통과 후 1년 이내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Guidance committee를 구성하고 1차 심사를 완료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Guidance committee 위원은 최소 1년에 1번씩 학생을 포함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박사과정생의 졸업논문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한 후 학위 청구논문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명단 제출: Guidance committee에서 학위 청구논문 제출이 결정되면, 1차 심사 진행 시기에 따라 ‘3월 또는 5월’(8월 졸업)과 ‘9월 또는 11월’(2월 졸업) 중 매 학기 초 학적팀에서 공지한 기일까지 논문심사위원명단을 학과 행정실로 제출한다.
- ③ 논문심사: 논문심사 대상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 청구논문 초안을 심사일 1주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고, 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논문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보고 관련 서류를 6월(8월 졸업)과 12월(2월 졸업) 중 매 학기 초 학적팀에서 공지되는 기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제출한다.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인준서 원본 및 사본 제출 후, 원본은 반환받아 학생이 보관한다.
- ⑤ 논문게재 혹은 게재승인 증빙(게재예정증명서)은 제10조 4항의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바이오정보학 전공 학생들은 바이오정보학협동과정의 과목수강 및 졸업요건 내규를 적용한다. (2020.3.6. 개정)
단, 종합시험 응시교과는 생명과학과 교수가 출제 가능한 교과에서 선택한다. (2025.6.18. 개정)